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	
번호	

제안년월일 : 2015. 3. 30.

제안자 : 복지도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조례안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수정 주요내용

“연임할 수 있다” 를 “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 로 함. (안 제4조의2제5항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의2제5항 중 “연임할 수 있다” 를 “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 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4조의2(동 복지협의체 구성·운영) ① <u>구청장은 동 단위 복지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인적안전망 구축을 위해 각 동에 동 복지협의체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동 복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지역사회 내 인적·물적자원 발굴 및 연계, 지원</u></li> <li>2. <u>긴급·위기사례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</u></li> <li>3. <u>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구에 대한 정기적 방문 및 모니터링</u></li> </ol>	<p>제4조의2(동 복지협의체 구성·운영) ① ~ ④ (개정안과 같음)</p>

	<p>4. <u>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</u></p> <p>5. <u>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</p> <p>③ <u>동 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.</u></p> <p>④ <u>동 복지협의체는 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,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과 지역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</u></p> <p>⑤ <u>동 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	<p>⑤ ----- ----- <u>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
--	--	---

	<p>⑥ <u>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 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⑦ <u>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동 복지협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	<p>⑥·⑦ (개정안과 같음)</p>
--	---	----------------------